◉환경부령 제10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록번호·신고번호”를 “등록·신고 여부”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방법 등)”을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중점관리물질의 중량 비율이 해당 제품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까지”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란 신고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유량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에서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한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물질별 총량을 기준으로 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

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을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기록·보존하여야”를 각각 “기록·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
2. 지위승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서류 뒤쪽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별표 11 제1호마목 금액란 중 “50,000원”을 “20,000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15,000원
사.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2,000원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8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고사항	중점관리 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①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연간 총량(톤)	②중점관리물질 분류 및 유해성정보	
	③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④제품의 용도	⑤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기능)	⑥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인체 주요 노출경로	⑦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유량(%)	⑧제품별 중점관리물질 연간 총량 (톤)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수입자 (신고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⑨상호(명칭)	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대표자	⑫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⑬수입량(톤)	⑭수입국

⑮수탁자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제품 사용설명서 1부 2. 제품 사진 1부 3. 다음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다.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의 신고한 내용	수수료 20,000원 (중기업은 10,000원, 소기업은 4,000원)

작성방법

1.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품 내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별 전체 함유량을 총합으로 산정한 결과가 1톤을 초과하고,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중량 비율이 0.1%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경우 이 신고서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①란은 ⑧란의 제품 전체를 합산한 값을 적습니다.
3. ②란은 중점관리물질의 알려진 분류 및 유해성정보를 적습니다. 물질의 분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81호, EU CLP 규정(Regulation (EC) No 1272/2008)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③란은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명들을 각각 적습니다. ③란 ~ ⑧란은 제품별로 작성합니다.
5. ④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서 제시한 용도(예: 세정제, 코팅제, 페인트 등)를 적습니다.
6. ⑤란은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기능)를 적습니다.
7. ⑥란은 입, 피부, 흡입, 기타 가운데 해당되는 노출경로를 모두 적습니다.
8. ⑦란은 하나의 제품 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을 각각 적습니다.
9. ⑧란은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전체 함유량을 제품별로 합산한 결과를 각각 적습니다.
10. ⑨란 ~ ⑭란은 신고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⑬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11. ⑮란은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제 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중점관리물질명 :
6.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
7.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
8. 신고 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방(유 역) 환 경 청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고사항	①신고번호	중점관리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변경사항	변경내용					
[ ] 제품을 새로 생산 · 수입	②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③제품의 용도	④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기능)	⑤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인체 주요 노출경로	⑥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량(%)	⑦제품별 중점관리물질 연간 총량(톤)

[ ] 노출정보 [ ] 용도 [ ] 함유량	제품명	변경 전	변경 후

[ ] 물질별 총량이 50% 이상 증가	⑧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연간 총량(톤)	
	변경 전	변경 후

[ ] 수입자 (신고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⑨상호(명칭)	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 대표자	⑫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⑬수입량 (톤)	⑭수입국

[ ] 수탁자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수수료 15,000원 (중기업은 7,500원, 소기업은 3,000원)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른 신고증에 발급된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⑭란까지의 작성방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과 같습니다.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4서식]

[ ] 화학물질 [ ] 등록 [ ] 중점관리물질 [ ] 신고 [ ] 면제확인 지위승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승계 사유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등록번호·신고번호		

	구분	승계 전	승계 후
신고사항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3 제1항에 따라 [ ] 화학물질 [ ] 등록 [ ] 중점관리물질 [ ] 신고 [ ] 면제확인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 결과통지서 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 2. 지위승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2,000원 (중기업은 1,000원, 소기업은 400원)
담당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지위승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고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210㎜×297㎜[백상지 80g/㎡]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신고사항 중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해당 변경신고와 지위승계 신고의 절차와 서식 및 신고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